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(안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, 별지 제5호 서식,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안전확인신고 위탁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,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하고,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(안 제38조, 제49조, 제52조 개정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,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 업무를 조정하여 안전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,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처분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부실인증 등 부작용 보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